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12. 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21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12. 6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○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부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취지에 맞게 천재지변,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의 생계자금을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의 용도로 변경함. (안 제3조제1호)
- 융자금상환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함(안 제4조제2항)
- 융자금 대부이율 변경 (안 제5조)
 - 융자이율을 연5%에서 연3%로 낮추어 융자받은 가구의 부담을 완화함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